

강원권 2단계 광역선도산업 육성계획



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



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선임연구원
thmink@hanmail.net

본 계획은 강원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「강원특별자치도 산업진흥법」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, 강원도 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. 본 계획은 강원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「강원특별자치도 산업진흥법」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, 강원도 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.

선도전략산업 선정

본 계획은 강원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「강원특별자치도 산업진흥법」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, 강원도 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. 본 계획은 강원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「강원특별자치도 산업진흥법」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, 강원도 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.

